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(박강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발 의 자: 박강산 의원(1명)
찬 성 자: 경기문, 남창진, 박유진, 박철성, 성흠제, 아이수루, 왕정순, 유정인, 이민옥, 이병도, 이소라, 이승미, 임규호, 전병주, 최재란, 홍국표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안교육, 대안교육기관, 위탁교육기관 등 정의(제2조)
- 나. 대안교육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제5조)
- 다.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(제6조)
- 라. 대안교육 재정지원(제7조)
- 마.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·감독 등(제9조)
- 바. 학생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및 편의 제공(제10조)
- 사. 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(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○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
○ 초·중등교육법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대안교육” 과 “대안교육기관” 은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2. “위탁교육기관” 이란 교육감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.
3. “학생” 이란 대안교육이 필요한 아동·청소년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 이라 한다)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

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)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육기관(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
2.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(연수)·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교육기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
4. 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)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기관의 등록(지정)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교육기관 회계·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3. 교육기관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
4. 대안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
5.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
6.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
7. 그 밖에 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③ 교육감은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재정지원)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인건비, 교육활동 운영비, 학생 급식비,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경비
2.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

하여 시장에게 「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)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9조(지도·감독)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기관은 지도·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.

② 교육기관이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3.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
4. 위탁교육기관이 지정해제된 경우

5.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

제10조(공공시설 이용)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, 지방자치단체,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」는 폐지한다.